

(참고) 용어 정의

? 유해화학물질은 어떤 물질인가요?

- 유독물질(809종), 허가물질(0종), 제한물질(12종), 금지물질(60종) 또는 사고대비물질(97종)로써 환경부에서 지정, 고시한 물질

?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방법 1) 화학물질정보시스템,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CAS No, 물질명으로 검색



검색결과 총 3건 결과 내 재 검색 검색 10개씩 보기

CAS번호	영문명	국문명	고유번호					합량 및 규제정보	시험 자료
			기존화학물질	유독대상 기준화학물질	유독물질	제한물질	금지물질		
50-00-0	Formalin [이명 : Formaldehyde.]	포르말린 [이명 : 폼알데하이드; 포름알데하이드; 포름올; 메탄알; 포르말리트; 포름알데히드용액.]	KE-17074	1	97-1-345	06-5-5	V	정보보기	

방법 2)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**관련 고시 확인**

-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(환경부고시 제2017-163호)
- 사고대비물질의 지정(환경부고시 제2017-107호)

(참고) 용어 정의

? 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?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)

-우편·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(예, 인터넷 판매 등)

? 시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제품에 시약, 試藥, Reagent 등 문구 확인
-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KS시약(시약특급, 시약1급, 특수시약) 해당여부 확인
- 제품의 카탈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 확인
(단,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(샘플)은 제외)



시약류 REAGENT	
그룹 수	37
구분	수산화나트륨
제품(모델명) / 영문이름	Sodium hydroxide
제품포장단위	500g, 1K, 25K
CAS번호	1301-73-2
분자식	
분자량	40.00
녹는점	
끓는점	1390도
인화점	
비중	2.13
용해도	
간략소개설명	촉정시료, 비누원료, 염색제...

<출처-부은약품상사>

시약 판매업 신고서 작성방법(1)

(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)

시약 판매업 신고서

※ 위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착실이 이루어진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양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
			10일	
신 고 인	상 호(명칭) ①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	
	주 소(사업장)	(전화번호 :)		
신 고 사 항	취급시설 보유 여부	[] 없음 [] 자가 [] 위탁 [] 임차		
	① 보관·저장시설 소재지	② (전화번호 :)		
	② 취급품목명	③ 전체연간취급량	kg 또는 t	
	④ 보관·저장시설능력	톤 또는 m ³	⑤ 운반시설 능력	톤 또는 m
	⑥ 종업원 수	명	⑦ 사업장 면적	m ²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① 사업장 기본정보 작성

② 취급 제품명 및 취급시설 현황 작성
(보관/저장 시설 보유시 해당)

※ 취급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예)황산 외
90종 으로 표기

연간 취급예정량 작성 방법(2)

(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)

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						
취급방식		[] 제조 [] 보관·저장 [] 판매 [] 사용 [] 운반				
유해화학물질			제품명	용도	취급예정량 (톤 또는 m³)	
구분	물질명	고유번호 또는 CAS No.			월간	연간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①			②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[] 유독물 [] 제 1급유독물 [] 사고대비용유독물						
합 계						

① 제품내 함유 유해화학물질 구분 선택, 물질명, CAS No. 작성

-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

② 취급(판매)하는 시약의 제품명, 용도, 월·연간 취급 예정량 작성

- 최근 판매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작성

※ 판매 품목은 모두 작성(제품명 아님)

- 황산 98%, 황산 50% → 황산으로 기재

※ 작성방법
 1.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[]에 모두 표기합니다.
 2.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 3.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.

취급시설 명세서(배치도) 작성방법(3)

(홈페이지 안내문 참조)

보관 및 배치 계획						
구분	적재단위	포장단위	적재단수	적재방법	층 보관량 (최대보관량)	비고
층계						
출산	(예시) 박스	1개 × 200개 20개 × 40개	2단	1박스 / 1단		

➤ 시설 면적(m²) 및 용량(m³), 수량, 위치도, 배치도 등의 자료 작성

배치도(사무실, 보관창고 및 선반배치도) 예시	
보관창고 용량 - 너비(m)×길이(m)× 높이(m)	선반 규격 - 너비(m)×길이(m)× 높이(m)

➤ 보관·저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 아님

취급시설 운영 사진	
관련 사진	관련 사진

시약정보 요약서 작성 예시

(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)

시약 정보 요약서		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 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의2제 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시약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판매업 상호(명칭)		
판매업 주소		
판매업 대표전화		
유해화학물질 정보	물질명	질산
	고유번호 또는 CAS No.	7697-37-2
	용도	실험실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	취급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급 시(사용 등)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(후드 등) 내에서 취급할 것 - 취급(사용 등)하는 시설 내 세안설비, 안전샤워 등을 설치할 것 - 취급 시 양압자급식호흡보호구, 보호의, 보호장갑 등을 착용할 것 - 모든 취급시설의 경우 누출감지 장치, 안전밸브, 경보기 및 정전기 제거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
	화학사고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할 것 - 취급 시 가연성 유기물과 접촉되면 자연발화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- 연소/열분해 시 과산화질소, 질소산화물 등의 부식성/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
	보관·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관저장 창고에 보관 시 이류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격리·보관하고,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- 보관저장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할 것
	운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어야 함 - 유기물질, 비금속, 금속, 암모니아, 클로로황산, 시안화물, 중크롬산염 등의 물질과 혼합·적재를 금지할 것
	그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절대 매립하지 말 것 - 탄산나트륨, 수산화칼슘으로 중화시킬 수 있으며, 이때 만들어지는 수용액은 다량의 물로 희석한 후 배출할 것 - 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할 것 -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물질안전원,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연락할 것

시약 정보 요약서		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 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의2제 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시약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판매업 상호(명칭)		
판매업 주소		
판매업 대표전화		
유해화학물질 정보	물질명	염산
	고유번호 또는 CAS No.	7647-01-0
	용도	연구개발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	취급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급 시(사용 등)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(후드 등) 내에서 취급할 것 - 취급 과정에서 염산을 희석할 경우 항상 물에 산을 넣을 것 - 모든 취급시설의 경우 누출감지 장치, 안전밸브, 경보기 및 정전기 제거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
	화학사고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석 또는 중화 시 다량의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- 용기가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- 화재 또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열원, 스파크, 불꽃과 격리할 것
	보관·저장	보관저장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,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할 것
	운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어야 함 - 운반 시 염산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-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,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여 용기를 적재할 것
	그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재 시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강한 독성기체가 방출되므로 주의할 것 -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물질안전원,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연락할 것

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처리 절차

(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)

